

구리 도시관리계획(교문1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구리 도시관리계획(교문1지구 지구단위계획)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2024. 04. 05.

구 리 시 장

1. 도시관리계획(교문1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조서
-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- 나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- 다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- 1) 교통시설(변경없음)
- 2) 공간시설(변경)
- 가) 녹지
- (1) 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				10,554.9	감)5,765.8	4,789.1	-	
변경	6	녹지	완충녹지	교문동 791 일원	6,211.2	감)3,090.0	3,121.2	건고88-86호 (88.02.29.)	
신설	7	녹지	완충녹지	교문동 794 일원	-	증)1,667.9	1,667.9	건고88-86호 (88.02.29.)	
폐지	7	녹지	경관녹지	교문동 754-5 일원	4,343.7	감)4,343.7	-	건고88-86호 (88.02.29.)	

(2) 녹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경사유
6	완충녹지	• 면적 감소 - 위치 : 교문동 360-1 일원 → 교문동 129-5 일원 - 면적 : 6,211.2㎡ → 3,121.2㎡	• 수변공원 신설에 따라 도로변의 완충녹지를 일부 축소하여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함
7	완충녹지	• 완충녹지6에서 분리 신설 - 위치 : 교문동 794 일원 - 면적 : 1,667.9㎡	• 수변공원 신설에 따라 기존의 완충녹지가 분리되어 새로운 번호를 부여함
7	경관녹지	• 폐지 - 위치 : 교문동 754-5 일원 - 면적 : 4,343.7㎡	• 수변공원 신설에 따라 기존 경관녹지를 폐지하고 수변공원에 포함하여 조성하고자 함

나) 공원

(1)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				3,081.1	증)21,257	24,338.1	-	
기정	14	교문2호 공원	어린이 공원	교문동 728 일원	1,524	-	1,524	건고88-86호 (88.02.29.)	지하부에 주차장67 중복결정
기정	15	교문3호 공원	어린이 공원	교문동 750 일원	1,557.1	-	1,557.1	건고88-86호 (88.02.29.)	지하부에 주차장68 중복결정
신설	2	이문안 호수 공원	수변 공원	교문동 129-5 일원	-	증)21,257	21,257	-	-

(2) 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공 원 명	변 경 내 용	변경사유
2	이문안호수공원	• 수변공원 신설 - 위치 : 교문동 129-5 일원 - 면적 : 21,257㎡	• 현황상 공원으로 사용해오던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현황에 맞는 행정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변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함

3) 유통 및 공급시설(변경없음)

4) 공공·문화체육시설(변경없음)

라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마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 없음) : 게재생략

2.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고시 도면 : 따로 붙임(게재 생략)

※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함.